

등록번호	여성가족과-24782
등록일자	2024. 11. 19.
결재일자	2024. 11. 19.
공개여부	비공개(5)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주무관	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 장	복지정책과 장	사회복지국 장	
김예진	이나영	이경희	대결 2024. 11. 19. 성윤진	전결	
협 조					

2024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고 양 시
[여 성 가 족 과]

2024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 고양시청소년재단 관리 운영 실태, 효율성 제고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I 지도 점검 실시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 및 제26조(검사·보고 등)
-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및 제11조(검사·보고 등)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지도감독)

2. 지도점검 배경 및 목적

고양시청소년재단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청소년재단을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점검 실시 과정

실지 점검에 앞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단에 사전 자료를 요구·점검하였으며, 2024. 10. 21. ~ 25.까지 청소년팀 2명이 실지 점검을 실시하였음.

4. 중점 점검 분야

이번 지도점검은 재단 주요 규정 및 규칙의 미비점과 불합리 사항, 인사·조직·예산·회계(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분야 업무추진의 합리성 및 적정성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선방향을 찾고 사전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II

지도 점검 결과

1. 총평

- 청소년재단은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주역, 고양 청소년」을 비전 목표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 진로체험 및 교육지원,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청소년 지도자대회에서 표창장(경기도지사상) 수상,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에서 최우수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 또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70,000천원, 교육청의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사업 80,000천원, 미래직업교육박람회 57,000천원 등 총407,000천원의 각종 공모사업을 수주하고 유휴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늘리는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
- 중요 규정들의 미비점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문책요구 등의 사항은 없었으나 예산·회계 집행상의 미비 및 관리 운영 소홀 등의 사항들이 확인되었음.
- 재단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 정비와 직원 직무 교육 실시 등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2. 지적 사항 총괄 : 8건

(단위 : 건)

합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8	-	3	4	1	

3. 지적사항 일람표

연번	건명 및 요약	조치요구
1	물품관리 운영기준 부적정	개선
2	계약 체결시 구비 서류 미비	주의
3	신용카드 발급대장 등 관리 소홀	주의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미비	개선
6	전보제한 기준 미비	개선
7	근무성적 평정 기준 미비	개선
8	가족사랑의 날 운영 소홀	권고

4. 지적사항 세부내용

1) 물품관리 운영 기준 부적정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소모품의 정의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시 소모품과 비소모품을 구분 관리하여야 함.
- ▶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는 「물품 및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소모품 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 이하이거나,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물품관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 내부 규정인 「물품 및 고정자산 관리규정」의 소모품 기준을 개정하여 물품관리 운영의 적정성 확보 하도록 “개선 요구”
----------	--

2) 계약 체결시 구비 서류 미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의하면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구분관리제), 근로자 노무비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선지급 경우,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거 1개월 미만의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 승인신청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체결 시 제출받아야 함.
- ▶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계약 등 다수의 공사계약에서 1개월 미만의 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 승인 신청서 미 징구

처분 요구	앞으로 1개월 미만의 공사 계약시 업체로부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 승인신청서 제출받도록 “주의 요구”
----------	---

3) 신용카드 발급대장 등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 ◇ 부서별로 발급된 구매카드는 발급대장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 회계담당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대장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지출원 및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를 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관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급대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요구”
----------	---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제잡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4.2.21. 청소년공간 및 문화체육 강좌 운영 확대를 위한 외부 기관 견학 등 3건의 사업추진 관련 경비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사업부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사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업관련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	--

5)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미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현재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음.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직원교육 규정을 개정하여 5년 단위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 요구”
----------	---

6) 전보제한 기준 미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르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 현재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업무 분야 와 보직기간을 별도 명시하여야 함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 「인사규정」 제4장 보직 및 전보에 별도 필수 보직기간(전보제한기간) 명시하도록 “개선 요구”
----------	---

7) 근무성적평정 기준 미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 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 인사규정 제6장 근무평정 전에 평정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
----------	--

8) 가족사랑의 날 운영 소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할 수 있음. 가족사랑의 날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방안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매주 수요일에는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여성가족부 주관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임.

-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에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에서는 매주 최소1회 이상의 정시퇴근일(가족사랑의 날)을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요구”
----------	--

III

향후 계획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조치 완료 시 까지 지속적인 관리 예정